

법률상 기본 지원자격

1.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구분 (지원직급)	대학졸업자·동등자격자			전문대학졸업자·동등자격자		
	연구실적연수	교육경력연수	계	연구실적연수	교육경력연수	계
교수	4	6	10	5	8	13
부교수	3	4	7	4	6	10
조교수	2	2	4	3	4	7
강사	1	1	2	1	2	3

- ※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하나가 미달하여도 두 기간을 합하여 ‘계’의 연수 이상이면 인정됨
- ※ 석·박사학위 과정은 연구실적연수에 포함(단, 석사는 2년까지. 석박사 통합하여 5년까지 인정함)
- ※ 산업체경력은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」 제4조에 따라 연구실적연수로 70%~100% 환산 가능 함

2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

- 가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나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다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라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마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바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사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아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자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1)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2)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차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카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